

병산리 동법

병 산 마 을

〈전 문〉

오랜 역사와 지형이 병풍으로 둘러쌓인 모양의 우리
병산부락 전통은 이웃과 서로 돋고 단결하여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을 함으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이 산세
좋고 아름다운 이 부락을 영원히 사랑하고 행복을 누
릴 수 있도록 굳게 다짐하면서 임시 동회에서 동칙을
결의하고 제정한다.

1994년 2월 24일(갑술년 정월보름달) 결의 제정
2018년 7월 30일 보완 개정(동회)

동칙 - 병산부락

제1조(목적) 이 동칙은 우리부락의 모든 일을 부락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단결하여 처리함으로 부락주민이 서로 돋고 뜻을 모아 행복한 생활을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락주민이라 함은(이하 “주민”이라 한다.) 병산부락에 행정상으로 전입 또는 출생신고 후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락세대라 함은(이하 “세대”라 한다.) 호적 또는 주민등록표상 독립된 병산부락내의 가구를 말하고 세대주라 함은 그 가구의 주인을 말한다.

제3조(병산부락경계)

1. 1914년 행정구역 통합(개편)으로 삼산면에 편입된 행정상의 부락경계를 말한다.
2. 병산리계 내 해면상의 최대 간조 시점까지 노출된 바다(개)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동칙은 병산주민에게만 적용된다.

제5조(주민실천사항) 주민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실천한다.

1. 도덕과 예의를 지키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2. 허례허식을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을 하여야 한다.
3. 도박과 미신을 버리고 서로 돋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주민상을 정립한다.
4. 동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꼭 이행한다.

제6조(부락민 자격상실) 부락민 부락에서 이사감으로 자격상실한다.

제7조(동회)

1. 부락일을 의논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동회를 둔다.
2. 동회는 정기동회와 임시동회로 구분한다.

동칙 - 병산부락

제8조(동회의 기능) 동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논하여 결의한다.

1. 동칙을 개정 또는 재정하는 일
2. 리장, 지도자, 부녀회장(단, 부녀회에서 추천)과 감사를 선출하는 일
3.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는 일
4. 정부지원사업과 부락자체 사업의 위치와 장소 결정하는 일
5. 부락의 수입과 지출금을 확정하고 결산 승인의 건
6. 감사보고에 의거 결손 및 변상금 또는 회수금을 결정 승인하는 일
7. 동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

제9조(리장의 자격)

1. 주민등록상 7년이상 거주자로서 마을에 봉사 및 성실한 사람
2. 금융거래 불량자 및 주민등록상 결함이 없는 자
3. 재산 농협 가입한 자의 재산이 있는자

제10조(동회 개최)

1. 정기동회 개최는 하기동회(양력 6월 30일) 대동회는 양력 12월 30일 개최하고 리장이 소집한다.
2. 임시동회는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대주 1/3이상 요구로 리장이 소집한다.
3. 리장은 동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보존한다.
4. 2항에 리장 유고시 지도자가 대행한다.(단, 1개월간 업무가 중단될 시 개발위원에서 추천·결정한다.

제11조(세대주의 동회활동 및 참석범위)

1. 각 세대의 세대주는 동회에 참석하여 부락의 모든 일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2. 동회에서 발언한 세대주는 동회 밖에서는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동회 참석 대상은 주민 각 세대의 세대주 성인 1명으로 한다.
4. 참석대상 세대주가 다른 사유로 불참할 경우 2세대의 성인 1명을 지명하

동칙 - 병산부락

여 참석할 수 있다.

5. 전 4항의 대리 참석 세대인도 전 1, 2, 3항의 세대주로 보며 발언할 권리 를 가진다.

제12조(임원 및 위원회 구성)

1. 동회 및 부락의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개발위원회로 구성한다.
2. 리장은 부락의 운영을 위하여 리장 1명 남자지도자 부녀회장 각 1명, 감사 1명 각반 반장으로 구성한다. 동회에서 리장,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된다.
3. 개발위원회 자격(원로 및 임원을 지낸 자) 중 5명으로 구성한다. 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동회에 보고한다.
4. 개발위원회 임무 부락에 피해나 부락의 손해 및 명예 훼손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의논하고 처리를 결정하고 임시동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리장의 임무 및 임원회 임기)

1. 리장은 부락내 외에서 부락을 대표하고 대표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리장은 행정상의 모든 일을 주민 또는 각 세대에 봉사하는 자세로 공정하게 처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3. 리장은 부락주민과 세대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전화와 구두에 의한 것도 문서로 본다)의 보고 통보 생산 및 보전의 책임자가 된다.
4. 리장은 부락의 제반 시설물과 비품을 책임성 있게 관리하여야 하고 천재지변으로 부락과 주민 각 세대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 24시간 내에 피해를 조사하여 삼산면 재해대책본부에 가장 빠른 수단으로 보고하고 그 보고 문서부분을 동회관에 비치, 피해자 또는 주민의 열람에 응하고 영구보전한다.
5. 리장은 행정관서 또는 기타 기관 업체에서 부락과 주민에게 관계되는 문서(전화)가 도착하면 즉시 문서 수발부에 접수 후 결재하고 주민요구에 공람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동칙 - 병산부락

6. 리장은 전5항의 문서(전화)에 의거 보고 통보할 경우 문서 수발부에 등재 후 보고(전화)하고 부본을 비치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영구 보존한다.
7. 리장 동회에서 결의한 사업을 진행 및 집행의 책임자가 된다.
8. 리장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내역 및 사업의 집행 결과를 동회에 보고한다.
9. 리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각반에 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
10. 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 후 동회에서 동의가 있으면 1년 연임할 수 있다.
(리장 임기 1년과 연임 1년 계 2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단, 임기가 끝나면 임기만료부터 2년으로 제한한다.)
지도자 감사 부녀회장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1. 리장은 마을에 설치한 상수도 저수지 관리하여야 하고, 마을 회장을 겸한다.

제14조(지도자 및 부녀회장의 임무)

1. 복지마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2. 리장이 유고시 지도자는 리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감사의 임무)

1. 동회에서 결의한 사항들의 실천 여부점검
2. 부락의 수입금과 지출금 및 문서(접수, 생산)에 대한 감사
3. 정부에서 시달하여 부락에서 시공한 사업과 부락기금으로 시공한 위탁 및 자체사업에 대한 지행상황 및 회계 결산 감사
4. 1,2,3,항을 감사후 결손 및 변상금을 판별하여 동회에 보고하여 결의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반장의 임무) 리장 및 지도자, 부녀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7조(개발위원회 임무)

1. 부락 전반적인 개발을 의논하여 개발위원회, 추진위원회를 둔다.

동칙 - 병산부락

2. 위원은 원로위원, 부락임원을 지낸 자 중 5명으로 구성한다.
3. 추진위원은 리장, 지도자, 감사, 부녀회장, 경노회장, 경로회 총무 6명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 의결은 위원 5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명 이상 찬성으로 결의되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5. 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단, 리장이 소집할 수도 있다.)

제18조(개발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기능) 개발위원회에서는 다음 사업의 장소와 위치를 선정하여 동회에 상정한다.

1. 정부에서 부락에 사업을 착공할려고 할 경우 그 위치 장소
2. 정부에서 시달한 사업을 부락에서 자체시공 또는 위탁 시공할 경우 그 위치 장소
3. 마을기금으로 자체 및 위탁시공할 경우 위치와 장소
4. 기타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부락일을 개발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제19조(사업의 집행) 동회에서 결의된 사업은 리장이 집행한다.

제20조(기금의 조성) 부탁기금은 동비 찬조금 사업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21조(기금관리)

1. 기금은 리장이 관리한다.
2. 기금의 출납상황은 출납부에 성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영) 기금은 주민 또는 세대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23조(기록보존) 리장은 기금출납부와 사업진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영구보존한다.

제24조(업무. 인계인수) 리장직을 사임하였을 때는 사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계인

동칙 - 병산부락

수조서를 작성하여 감사입회하에 신임리장에게 제반 업무와 기금출납부 각종 문서비품과 시설물 대장 등을 인계하고 신임리장은 확인후 인수하여야 한다.

제25조(변상) 인계인수시 부족 또는 손실이 있을 때는 인계자는 즉시 변상하고 감사가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동칙은 201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동칙은 시행전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계년도) 부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리장유고) 리장이 1개월 이상 유고시는 지도자가 대행한다.(다만,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주민의 해면사용) 병산리 지선(리)의 최대간조 시점까지 해면의 관리 및 사용권은 병산 주민에게 있다.

제6조 동칙제5조 주민실천사항을 위반하여 주민들의 지탄대상이 된 자는 동회 개최시 호출하여 전체주민이름으로 징계 또는 동회에 불참시킬 수 있다.

제7조 동칙제13조를 리장의 임무 및 임원의 임기로 하고 지도자, 감사, 부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동칙제10조 동회는 남자 세대주 2/3 참석과 참석세대주 1/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 동내 기금이 부족할 때는 동회에서 부과할 수 있다. 동법 결의 재정 세대주 명부